

고속도로 설계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적용사유
2. 항목별 평가기준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공동사항	① 이 기준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한다. ② 평가 적용기준일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공고일로 한다. ③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로법 제10조의 1호[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호[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에 해당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 도로법 제10조의 3호(특별시·광역시도), 4호(지방도)에 해당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동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거나 설계속도 80km/hr 이상인 도로 ④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계약기간 150일 이상인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 및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일괄입찰, 기술자문,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 계약기간 60일 이상인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계약기간 90일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설계VE * 단,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설계, 유지관리 단계에서 시행한 방음시설, 깎기비탈면 보수·보강, 줄음선퍼 신설·개량, 휴게소 개량 설계 등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동사항	① 이 기준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한다. ②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 적용기준일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로 한다. ③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로법 제10조의 1호[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호[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에 해당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 도로법 제10조의 3호(특별시·광역시도), 4호(지방도)에 해당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동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거나 설계속도 80km/hr 이상인 도로 ④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계약기간 150일 이상인 사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일괄입찰 ,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자문,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 계약기간 60일 이상인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계약기간 90일 이상인 일괄입찰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설계VE [단,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설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시행한 방음시설, 깎기비탈면 보수·보강, 줄음선퍼 신설·개량, 휴게소 개량 설계 등의 유사 수준 설계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 내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 새만금개발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에 한함),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 국 외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⑥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한다. ⑦ 본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단계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 실시설계(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 1.0 -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타당성 및 기본설계 : 0.8 - 설계VE, 기술자문,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시공단계) : 0.6	「사전타당성조사 엔지니어링 강화방안」 반영 (기획처-373, '26.1) 기준 명확화 (기 중심제 기준개정 完)

현행				개정(안)				적용사유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가점	마. 특별제안	+0.5	○ 산출식 : 특별제안 획득가점 ≤ 0.5	가점	마. 특별제안	+0.5	○ 산출식 : 특별제안 획득가점 ≤ 0.5																																								
			○ 특별제안 획득가점 : 평가대상 업체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발주부서에서 시행한 특별제안에 참여하여 획득한 가점 ※ 특별제안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제안 시행부서 평가기준에 의함				○ 특별제안 획득가점 : 평가대상 업체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발주부서에서 시행한 특별제안에 참여하여 획득한 가점 ※ 특별제안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제안 시행부서 평가기준에 의함																																								
3. 신용도	소 계	12.0		3. 신용도	소 계	10.0																																									
	가. 영업(업무)정지	3.0	○ 산출식 : 배점 - (A+B) ≥ 0			가. 영업(업무)정지	3.0		○ 산출식 : 배점 - (A+B) ≥ 0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A)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참여기술인(B)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환산시, 1천만원 → 1개월(30일)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 과징금 산정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A)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참여기술인(B)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0.2점, 1월초과 2월이하 0.4점…) ○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환산시, 1천만원 → 1개월(30일)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 과징금 산정기준)																																						
	나. 신용평가등급	3.0	○ 산출식 : 획득점수			나. 신용평가등급	3.0		○ 산출식 : 획득점수																																						
		○ A : 신용평가등급(붙임#4 참조)에 따른 득점비율				○ A : 신용평가등급(붙임#4 참조)에 따른 득점비율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0</td></tr></table>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0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0</td></tr></table>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0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한가지를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한가지를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에 따라 만점 기준을 하향할 수 있음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에 따라 만점 기준을 하향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적용사유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3. 신용도	다. 설계관련 별점	4.0	○ 산출식 : 배점 × A × B ○ 별점합계 = 설계사 별점 +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 *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 = ∑ (설계사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 ÷ ∑ (설계사별 당해 건설엔지 니어링 참여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수)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최근 2년간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합산별점 평가 <table><tr><th>합산별점 합계</th><th>0.5점 미만</th><th>0.5점 이상 1.5점 미만</th><th>1.5점 이상 2.5점 미만</th><th>2.5점 이상 3.5점 미만</th><th>3.5점 이상</th></tr><tr><td>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우리공사 유관부서 설계관련 별점 평가 <table><tr><th>우리공사 별점합계</th><th>0.5점 미만</th><th>0.5점 이상 1.5점 미만</th><th>1.5점 이상 2.5점 미만</th><th>2.5점 이상 3.5점 미만</th><th>3.5점 이상</th></tr><tr><td>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우리공사 별점합계는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에서 “다. 그 밖의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별점으로, 업체 또는 건설 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우리 공사로부터 받은 모든 별점의 합계를 해당 반기별점으로 하고,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의 최근 2년간(4반기)의 반기별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산정(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점을 따름)	합산별점 합계	0.5점 미만	0.5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계수(A)	1.0	0.9	0.8	0.7	0.6	우리공사 별점합계	0.5점 미만	0.5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계수(B)	1.0	0.9	0.8	0.7	0.6	라. 감사기관 처분	2.0	○ 산출식 : 배점 × A ○ A : 처분 계수 <table><tr><th>처 분 감점합계</th><th>0.50점 미만</th><th>0.50점 이상 0.75점 미만</th><th>0.75점 이상 1.00점 미만</th><th>1.00점 이상 1.25점 미만</th><th>1.25점 이상</th></tr><tr><td>계 수 (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설계부실로 최근 2년간 설계사 및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이 우리공사 감사실로부터 주의, 경고 처분(이하 “처분”)을 받은 건수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 처분감점 합계 = 설계사 처분감점 + 기술인별 처분감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유형별 처분감점(B)</th></tr><tr><th>주의</th><th>경고</th></tr><tr><td>설 계 사</td><td>0.25점 / 건</td><td>0.5점 / 건</td></tr><tr><td>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td><td>0.1점 / 건</td><td>0.2점 / 건</td></tr></table> - 설계사(기술인별) 감사처분 감점 = ∑ (B × 처분 건수) - 감사처분은 공문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처 분 감점합계	0.50점 미만	0.50점 이상 0.75점 미만	0.75점 이상 1.00점 미만	1.00점 이상 1.25점 미만	1.25점 이상	계 수 (A)	1.0	0.9	0.8	0.7	0.6	구 분	유형별 처분감점(B)		주의	경고	설 계 사	0.25점 / 건	0.5점 / 건	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0.1점 / 건	0.2점 / 건
	합산별점 합계	0.5점 미만	0.5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계수(A)	1.0	0.9	0.8	0.7	0.6																																																
우리공사 별점합계	0.5점 미만	0.5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계수(B)	1.0	0.9	0.8	0.7	0.6																																																
처 분 감점합계	0.50점 미만	0.50점 이상 0.75점 미만	0.75점 이상 1.00점 미만	1.00점 이상 1.25점 미만	1.25점 이상																																																
계 수 (A)	1.0	0.9	0.8	0.7	0.6																																																
구 분	유형별 처분감점(B)																																																				
	주의	경고																																																			
설 계 사	0.25점 / 건	0.5점 / 건																																																			
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0.1점 / 건	0.2점 / 건																																																			
								「감사기관 처분」 평가기준 삭제 (실효성 확보)																																													
3. 신용도	다. 설계관련 별점	4.0	○ 산출식 : 배점 × A × B ○ 별점합계 = 설계사 별점 +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 *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 = ∑ (설계사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별점) ÷ ∑ (설계사별 당해 건설엔지 니어링 참여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수)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최근 2년간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합산별점 평가 <table><tr><th>합산별점 합계</th><th>0.5점 미만</th><th>0.5점 이상 1.5점 미만</th><th>1.5점 이상 2.5점 미만</th><th>2.5점 이상 3.5점 미만</th><th>3.5점 이상</th></tr><tr><td>계수(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우리공사 유관부서 설계관련 별점 평가 <table><tr><th>우리공사 별점합계</th><th>0.5점 미만</th><th>0.5점 이상 1.5점 미만</th><th>1.5점 이상 2.5점 미만</th><th>2.5점 이상 3.5점 미만</th><th>3.5점 이상</th></tr><tr><td>계수(B)</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우리공사 별점합계는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에서 “다. 그 밖의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별점으로, 업체 또는 건설 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우리 공사로부터 받은 모든 별점의 합계를 해당 반기별점으로 하고,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의 최근 2년간(4반기)의 반기별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산정[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점을 따름]	합산별점 합계	0.5점 미만	0.5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계수(A)	1.0	0.9	0.8	0.7	0.6	우리공사 별점합계	0.5점 미만	0.5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계수(B)	1.0	0.9	0.8	0.7	0.6	라. 감사기관 처분	2.0	○ 산출식 : 배점 × A ○ A : 처분 계수 <table><tr><th>처 분 감점합계</th><th>0.50점 미만</th><th>0.50점 이상 0.75점 미만</th><th>0.75점 이상 1.00점 미만</th><th>1.00점 이상 1.25점 미만</th><th>1.25점 이상</th></tr><tr><td>계 수 (A)</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설계부실로 최근 2년간 설계사 및 책임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이 우리공사 감사실로부터 주의, 경고 처분(이하 “처분”)을 받은 건수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 처분감점 합계 = 설계사 처분감점 + 기술인별 처분감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유형별 처분감점(B)</th></tr><tr><th>주의</th><th>경고</th></tr><tr><td>설 계 사</td><td>0.25점 / 건</td><td>0.5점 / 건</td></tr><tr><td>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td><td>0.1점 / 건</td><td>0.2점 / 건</td></tr></table> - 설계사(기술인별) 감사처분 감점 = ∑ (B × 처분 건수) - 감사처분은 공문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처 분 감점합계	0.50점 미만	0.50점 이상 0.75점 미만	0.75점 이상 1.00점 미만	1.00점 이상 1.25점 미만	1.25점 이상	계 수 (A)	1.0	0.9	0.8	0.7	0.6	구 분	유형별 처분감점(B)		주의	경고	설 계 사	0.25점 / 건	0.5점 / 건	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0.1점 / 건
합산별점 합계	0.5점 미만	0.5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계수(A)	1.0	0.9	0.8	0.7	0.6																																																
우리공사 별점합계	0.5점 미만	0.5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계수(B)	1.0	0.9	0.8	0.7	0.6																																																
처 분 감점합계	0.50점 미만	0.50점 이상 0.75점 미만	0.75점 이상 1.00점 미만	1.00점 이상 1.25점 미만	1.25점 이상																																																
계 수 (A)	1.0	0.9	0.8	0.7	0.6																																																
구 분	유형별 처분감점(B)																																																				
	주의	경고																																																			
설 계 사	0.25점 / 건	0.5점 / 건																																																			
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0.1점 / 건	0.2점 / 건																																																			

현행				개정(안)				적용사유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3.0																											
	가. 개발실적	2.0	○ 산출식 = $\sum (\text{건당 } 1.0 \times A \times B) \leq 2.0\text{점}$ ○ A: 기술 등급별 가중치 <table><tr><th>구 분</th><th>건설신기술</th><th>특 허</th><th>실용신안</th></tr><tr><td>가중치</td><td>2.0</td><td>1.0</td><td>0.5</td></tr></table> ○ B: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table><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h>20년이상</th></tr><tr><td>특 허</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실용신안</td><td>1.0</td><td>0.8</td><td>0</td><td>0</td></tr></table>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실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2.0	1.0	0.5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2.0	1.0	0.5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나. 투자실적	9.0	○ 산출식 = 배점 × A <table><tr><th>투 자 실 적</th><th>1.50%이상</th><th>1.50%미만 1.25%이상</th><th>1.25%미만 1.00%이상</th><th>1.00%미만 0.75%이상</th><th>0.75%미만 0.50%이상</th></tr><tr><td>비율(A)</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투자실적 = $\frac{\text{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합계}}{\text{최근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 \times 100$ ○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것이며, 소관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조달청이 공지하는 기술용역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에 따른 최근 3개년에 대해 평가함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투 자 실 적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비율(A)	100%	90%	80%	70%	60%												
투 자 실 적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비율(A)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0																											
	가. 개발실적	2.0	○ 산출식 = $\sum (\text{건당 } 1.0 \times A \times B) \leq 2.0\text{점}$ ○ A: 기술 등급별 가중치 <table><tr><th>구 분</th><th>건설신기술</th><th>특 허</th><th>실용신안</th></tr><tr><td>가중치</td><td>2.0</td><td>1.0</td><td>0.5</td></tr></table> ○ B: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table><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h>20년이상</th></tr><tr><td>특 허</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실용신안</td><td>1.0</td><td>0.8</td><td>0</td><td>0</td></tr></table>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실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2.0	1.0	0.5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2.0	1.0	0.5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나. 투자실적	10.0	○ 산출식 = 배점 × A <table><tr><th>투 자 실 적</th><th>1.50%이상</th><th>1.50%미만 1.25%이상</th><th>1.25%미만 1.00%이상</th><th>1.00%미만 0.75%이상</th><th>0.75%미만 0.50%이상</th></tr><tr><td>비율(A)</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투자실적 = $\frac{\text{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합계}}{\text{최근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 \times 100$ ○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것이며, 소관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조달청이 공지하는 기술용역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에 따른 최근 3개년에 대해 평가함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투 자 실 적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비율(A)	100%	90%	80%	70%	60%												
투 자 실 적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비율(A)	100%	90%	80%	70%	60%																								

「감사관 처분」
평가기준 삭제에
따른 배점조정

현행				개정(안)				적용사유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2.0	○ 산출식 = $\sum (\text{건당 } 1.0 \times A \times B \times C) \leq 2.0\text{점}$ ○ A: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 가중치 <table><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r><td>가중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가중치는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B: 기술 등급별 가중치 <table><tr><td>구 분</td><td>건설신기술</td><td>특 허</td><td>실용신안</td></tr><tr><td>가중치</td><td>1.0</td><td>0.6</td><td>0.3</td></tr></table> ○ C: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d>20년이상</td></tr><tr><td>특 허</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실용신안</td><td>1.0</td><td>0.8</td><td>0</td><td>0</td></tr></table>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건설신기술의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한국건설기술협회)이 증빙 발급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에 의거 평가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발명진흥회)이 증빙 발급한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3.0	○ 산출식 = $\sum (\text{건당 } 1.0 \times A \times B \times C) \leq 3.0\text{점}$ ○ A: 건설신기술, 도공기술마켓,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 가중치 <table><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r><td>가중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 가중치는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B: 기술 등급별 가중치 <table><tr><td>구 분</td><td>건설신기술</td><td>도공기술마켓</td><td>특 허</td><td>실용신안</td></tr><tr><td>가중치</td><td>1.0</td><td>0.8</td><td>0.6</td><td>0.3</td></tr></table> ○ C: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d>20년이상</td></tr><tr><td>특 허</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실용신안</td><td>1.0</td><td>0.8</td><td>0</td><td>0</td></tr></table>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도공기술마켓 등록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건설신기술의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한국건설기술협회)이 증빙 발급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에 의거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도공기술마켓 등록기술을 인증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인증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술마켓 협의체가 발급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인증기관 한국도로공사)” 및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발명진흥회)이 증빙 발급한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에 의거 심사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발명진흥회)이 증빙 발급한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구 분	건설신기술	도공기술마켓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1.0	0.8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감사원 차분」 평가기준 삭제에 따른 배점조정 및 「도공기술마켓 활용우대」 반영 (기술마켓차-2864, '25.9)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구 분	건설신기술	도공기술마켓	특 허	실용신안																																																																																								
가중치	1.0	0.8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특 허	1.0	0.8	0.6	0																																																																																								
실용신안	1.0	0.8	0	0																																																																																								

현행				개정(안)				적용사유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5.업 무 중복도	계	10.0	○ 산출식 : 기술인별 배점 × A	5.업 무 중복도	계	10.0	○ 산출식 : 기술인별 배점 × A	기준 명확화 (기 중심제 기준개정 完)																								
	1) 사업책임기술인	3.0	○ A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총 중복비용에 따른 적용비용 - 책임(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	3.0	○ A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총 중복비용에 따른 적용비용 - 책임(참여)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도로분야 · 구조분야 · 토질 및 지질분야 · 토목시공분야	4.0 (0.8) (1.5) (0.9) (0.8)	<table><tr><th>중복비용</th><th>250% 미만</th><th>250% 이상 350% 미만</th><th>350% 이상 450% 미만</th><th>450% 이상 550% 미만</th><th>550% 이상</th></tr><tr><td>적용비용 (A)</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중복비용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적용비용 (A)	100%	90%	80%	70%	60%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도로분야 · 구조분야 · 토질 및 지질분야 · 토목시공분야	4.0 (0.8) (1.5) (0.9) (0.8)	<table><tr><th>중복비용</th><th>250% 미만</th><th>250% 이상 350% 미만</th><th>350% 이상 450% 미만</th><th>450% 이상 550% 미만</th><th>550% 이상</th></tr><tr><td>적용비용 (A)</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중복비용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적용비용 (A)	100%	90%	80%	70%	60%
	중복비용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적용비용 (A)	100%	90%		80%	70%	60%																									
중복비용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적용비용 (A)	100%	90%	80%	70%	60%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도로분야 · 구조분야 · 토질 및 지질분야 · 토목시공분야	2.0 (0.4) (0.7) (0.5) (0.4)	<table><tr><th>중복비용</th><th>200% 미만</th><th>200% 이상 250% 미만</th><th>250% 이상 300% 미만</th><th>300% 이상 350% 미만</th><th>350% 이상</th></tr><tr><td>적용비용 (A)</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중복비용 = Σ [기술인별 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의 중복(잔여) 과업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단계별계수] / 당해 과업기간 × 100 -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단계별 계수 0.6으로 적용 - 중복(잔여) 과업기간이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설계VE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60일 미만,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설계VE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90일 미만인 경우에 총 중복기간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기간 미산입 - 기술자문(비상주부분), 일괄, 대안, 기술제안,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의 실적은 중복대상에서 제외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만 산정 - 자료 오류, 누락 확인시 해당기술인 0점 처리 - ①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270호) 시행일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해당), ③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시점 및 건설엔지니어링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시행일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를 중복기간으로 산정	중복비용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적용비용 (A)	100%	90%	80%	70%	60%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도로분야 · 구조분야 · 토질 및 지질분야 · 토목시공분야	2.0 (0.4) (0.7) (0.5) (0.4)	<table><tr><th>중복비용</th><th>200% 미만</th><th>200% 이상 250% 미만</th><th>250% 이상 300% 미만</th><th>300% 이상 350% 미만</th><th>350% 이상</th></tr><tr><td>적용비용 (A)</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중복비용 = Σ [기술인별 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의 중복(잔여) 과업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단계별계수] / 당해 과업기간 × 100 -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지방청 , 행복청, 새만금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 분야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단계별 계수 0.6으로 적용 - 중복(잔여) 과업기간이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설계VE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60일 미만,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설계VE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90일 미만인 경우에 총 중복기간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기간 미산입 - 기술자문(비상주부분), 일괄, 대안, 기술제안,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의 실적은 중복대상에서 제외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만 산정 - 자료 오류, 누락 확인시 해당기술인 0점 처리 - ①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270호) 시행일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해당), ③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시점 및 건설엔지니어링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시행일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를 중복기간으로 산정	중복비용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적용비용 (A)	100%	90%	80%	70%	60%			
중복비용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적용비용 (A)	100%	90%	80%	70%	60%																											
중복비용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적용비용 (A)	100%	90%	80%	70%	60%																											
4) 실무기술인	1.0	4) 실무기술인	1.0																													

현행							개정(안)							적용사유
(붙임#1) 설계엔지니어링 발주단계별 참여기술인 평가항목 배점기준							(붙임#1) 설계엔지니어링 발주단계별 참여기술인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시		기본 및 실시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시		기본 및 실시		
			FQ(5위이상)	SOQ&TPP Q(5위미만)	FQ(5위이상)	SOQ&TPP Q(5위미만)				FQ(5위이상)	SOQ&TPP Q(5위미만)	FQ(5위이상)	SOQ&TPP Q(5위미만)	
2. 유사 건설 엔지 니어링 수행 실적	소 계		15.0				2. 유사 건설 엔지 니어링 수행 실적	소 계		15.0				
	가. 실적금액 및 건수		12.0					가. 실적금액 및 건수		12.0				
	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1.0					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1.0				
	다. BIM평가 결과		1.0					다. BIM평가 결과		1.0				
	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					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				
	마. 가점(특별제안)		+0.5					마. 가점(특별제안)		+0.5				
3. 신용도	소 계		12.0				3. 신용도	소 계		10.0				
	가.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3.0					가.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3.0				
	나. 신용평가등급		3.0					나. 신용평가등급		3.0				
	다. 설계관련 벌점		4.0					다. 설계관련 벌점		4.0				
	라. 감사기관 처분		2.0					라. 감사기관 처분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3.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0				「감사기관 처분」 평가기준 삭제에 따른 배점조정
	가. 개발실적		2.0					가. 개발실적		2.0				
	나. 투자실적		9.0					나. 투자실적		10.0				
	다. 활용실적		2.0					다. 활용실적		3.0				
5. 업무중복도	소 계		10.0	10.0	10.0	10.0	5. 업무중복도	소 계		10.0	10.0	10.0	10.0	
	1) 사업책임		3.0	3.0	3.0	3.0		1) 사업책임		3.0	3.0	3.0	3.0	
	2) 분야별 책임		4.0	4.0	4.0	4.0		2) 분야별 책임		4.0	4.0	4.0	4.0	
	- 도로분야		(0.8)	(0.8)	(0.8)	(0.8)		- 도로분야		(0.8)	(0.8)	(0.8)	(0.8)	
	- 구조분야		(1.5)	(1.5)	(1.4)	(1.4)		- 구조분야		(1.5)	(1.5)	(1.4)	(1.4)	
	- 토질및지질분야		(0.9)	(0.9)	(0.8)	(0.8)		- 토질및지질분야		(0.9)	(0.9)	(0.8)	(0.8)	
	- 토목시공분야		(0.8)	(0.8)	(0.4)	(0.4)		- 토목시공분야		(0.8)	(0.8)	(0.4)	(0.4)	
	- 교통분야		-	-	(0.6)	(0.6)		- 교통분야		-	-	(0.6)	(0.6)	
	3) 분야별 참여		2.0	2.0	2.0	2.0		3) 분야별 참여		2.0	2.0	2.0	2.0	
	- 도로분야		(0.4)	(0.4)	(0.4)	(0.4)		- 도로분야		(0.4)	(0.4)	(0.4)	(0.4)	
	- 구조분야		(0.7)	(0.7)	(0.7)	(0.7)		- 구조분야		(0.7)	(0.7)	(0.7)	(0.7)	
	- 토질및지질분야		(0.5)	(0.5)	(0.4)	(0.4)		- 토질및지질분야		(0.5)	(0.5)	(0.4)	(0.4)	
	- 토목시공분야		(0.4)	(0.4)	(0.2)	(0.2)		- 토목시공분야		(0.4)	(0.4)	(0.2)	(0.2)	
	- 교통분야		-	-	(0.3)	(0.3)		- 교통분야		-	-	(0.3)	(0.3)	
	4) 실무기술인		1.0	1.0	1.0	1.0		4) 실무기술인		1.0	1.0	1.0	1.0	
6. 감점	비리관련 설계사 감점		-10				6. 감점	비리관련 설계사 감점		-10				
7.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7.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